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918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91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2가단2217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4. 21.

판결선고 2023. 5. 2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2가단2217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4,889,683원 및 그 중 13,684,510원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62,898원 및 그 중 9,424,122원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아래 각 대출금채무를 각 33,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비 고
①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30,000,000원	2015. 10. 27.	2017. 10. 27.	주채무자 :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33,000,000원)
②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300,000,000원	2015. 10. 27.	2017. 10. 27.	주채무자 :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33,000,000원)

나. 소외 회사는 2017. 7. 20.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 8.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8. 1. 10.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8.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는 회생채권 중 일부인 합계 1,510,619,396원에 대해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2018.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계획안에서는, ㉠ 먼저 회생계획 인가일(2018. 1. 10.)에 기존의 주식(80,000주) 2주를 1주로 병합(액면금은 5,000원으로 동일)하고, ㉡ 위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2018. 1. 11.)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하여 신주를 발행(액면가 및 발행가는 각 5,000원,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2018. 1. 12.)에 기존의 주식과 신주 등 주식 전부에 대하여 5주를 1주로 재병합(액면금은 5,000원으로 동일, 단주는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결국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를 때, 소외 회사에 대한 전체 회생채권 중 합계 1,510,619,396원에 대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합계 302,092주의 신주가 발행(단주는 무상 소각)되었다가 구주 및 신주 합계 342,092주(= 구주 40,000주 + 신주 302,092주)가 재병합(단주는 무상 소각)되어 최종적으로 합계 68,383주의 주식이 남게 되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채권액 중 일부인 26,160,259원에 대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합계 5,232주(= 26,160,259원/5,000원)의 신주가 발행되었다가 주식 재병합으로 최종적으로 1,046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2018. 1. 11.경 신주발행에 따라 합계 342,092주의 주식이 존재할 때를 기준으로 1주당 3,294원으로 평가된다.

마. 소외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변제금으로 ① 2020. 12. 28. 3,329,488원, ② 2021. 4. 30. 3,329,488원, ③ 2021. 8. 17. 3,995,385원, ④ 2021. 12. 6. 2,663,590원, ⑤ 2022. 5. 10. 1,664,744원, ⑥ 2022. 11. 30. 1,331,795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상환일자 경과 후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실제로 인수하여 만족을 얻은 시가 합계액인 17,234,208원(= 5,232주 × 3,294원)의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2) 나아가 위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액 및 각 분할 변제액을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원고가 적용한 변제충당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상당 부분 소멸하였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채무금으로, ①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4,889,683원 및 그 중 13,684,510원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62,898원 및 그 중 9,424,122원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김동규, 판사 송승훈

별지